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2017. 4. 19.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자: 김종곤 의원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 부의장 선거의 1, 2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의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는 것을 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의장단의 의정경험 중요성을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의장·부의장 선거(안 제6조)

-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결선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득표수가 같은 경우 당선자 결정방법 변경
  - (현행)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 (변경) 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함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7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2017. 3. 31. ~ 4.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의원'을, 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의정 경험이 많은 의원을 당선자로 하여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